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3일, 이성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소위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이성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 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 활용 노력 의무 및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 제3조제2항)

가. 검토의견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드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¹⁾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방재”라는 용어는 재난 대응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의 예방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입법례²⁾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1) 경북일보, 드론스테이션 기반 산불 감시체계 제안…“의성 산불 같은 참사 막아야”, 2025.4.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6666>
소방방재신문, [기고] 산불 예방과 산림 보존 위한 드론공유 시스템 필요해, 2025.3.31.
<https://fpn119.co.kr/232177>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드론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재난의 예방 등에 드론이 활용되어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시하려는 경우 중복 가능성이 있는 “방재”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재난 분야 등에 대한 드론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드론이 재난 예방·감시·복구 등에 활용되기 위하여는 장비 구입, 기술 개발, 운용 인력 양성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공공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지자체가 재난 예방·대응 등을 위해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개정안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의미와 중복되는 “방재”를 삭제하는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의미와 중복되는
“방재”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복구,방재·방역”을 “복구, 방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방역”을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방역”으로, “한다”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생략)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소방 · 방재 · 방역 · 보건 · 측량 · 감시 · 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u>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방역</u> ----- ----- ----- -- <u>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